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밸류웨이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(주식)

□ 변경 사유

- (1)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
- (2) 자본시장법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
- (3) 소장펀드 수익자과세 안내사항 추가

□ 효력발생일 : 2015년 2월 4일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서식개정에 의한 정정	<u>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2014. 8. 31.	2014. 12. 31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	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	<u>환매조건부 매수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<u>개인 15.4%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4%</u>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<u>주민세 1.4%</u>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	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<u>15.4%(지방소득세 포함)</u>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<u>지방소득세 1.4%</u>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

	<p>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(부동산임대소득, 과세소득, 기타소득)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(최고한도 세율 35%, 주민세 3.5%)로 종합과세 됩니다.</p>	<p>연간 금융소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(부동산임대소득, 과세소득, 기타소득)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</p>
	<p>4)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% 공제(연240만원 한도).다만,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·양도하거나 원금·이자·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</p>	<p>4)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납입액의 40% 공제(연240만원 한도, 단 <u>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%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</u>).다만,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·양도하거나 원금·이자·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</p>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</p>	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<u>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</p>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</p>	<p>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</p>	<p><u>(2) 집합투자업자는(1)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.</u>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</p>	<p>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</p>	<p>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</p>

		<p>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
--	--	---